

2026. 9. 23.

수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박미정 의원



(발의자 : 1명)

(찬성자 : 9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붙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의원 발의)

의안 번호	42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박미정 의원(1명)

찬 성 자 : 조희옥·정민우·김형우·
박은경·이슬기·김안숙·
정지광·안종숙·오지환
의원(총9명)

1. 제안이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상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시 관련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방지하고 향후 명칭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삭제하고,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인용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생략함(안 제26조제2항)

나.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을 현행화하여 규정함(안 제2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밝은미래국 기후환경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환경정책위원회 설치·운영)”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제11조제1항의 위원회”로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환경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환경정책위원회</u> <u>설치 · 운영</u>	제4장 <u>환경정책위원회</u>
제26조 (<u>환경정책위원회 설치 · 운영</u>)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제26조 (<u>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u>)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환경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② ----- ----- ----- ----- 제11조제1항의 위원회----- -----

대신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
문

2.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검토
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
도 및 확산

4.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5. 서초의제21 추진에 관한 의
견제시 및 자문

6. 그 밖에 환경정책 전반에 관
한 주요사항 등

-----.

<삭 제>

관 계 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생략)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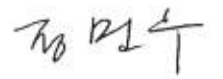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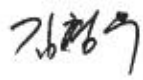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생략)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⑤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정의원 발의) 서명부

발의자		찬성자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박미정		조희옥	
		정민우	
		김형우	
		박은경	
		이슬기	
		김만숙	
		정지경	
		안병욱	
		오지현	